

# 도료가공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척추전방전위증

성별	여	나이	53세	직종	도료 제조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

## 1 개 요

임 ○ ○은 (주) ○ ○기업에 1991년 11월에 입사하여 2003년 5월 28일 작업중 물건이 떨어져 허리를 굽혀 줍는 도중에 일어나다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경위로 '요추부 염좌'로 진단되었다.

### 2 작업환경

임○○의 작업은 재해당시 포장작업에서 발생하였는데, 하루 작업중 용기투입작업 (용기 무게는 300g에서 최대 1kg), 박스포장작업 및 빈 박스 테이핑 작업과 같은 직무들을 수행하고 있었다. 직무간 작업 순환이 1일 2~3회 이루어지고 있었다. 작업은 박스포장작업과 빈 박스 테이핑 작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서서 작업을 수행하였다.

#### 3 의학적 소견 및 고찰

척추전방전위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나이이다. 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은 요통의 소인은 아니다. 이 근로자는 현재 연령이 54세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L4-5의 척추전방전위증과 L5-S1의 척추분리증을 진단받았다. 현재 연령과 척추질환의 진단으로 보아 비직업성의 퇴행성 척추질환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. 입

식의 용기 투입작업 및 포장작업이 운동선수와 같은 외상성 척추질환과 중량물 취급 등 허리에 물리적 부하가 큰 인간공학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. 또 한 위 작업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에서도 NIOSH LIFTING 공식에서는 중량물 취급 이 아니므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며 허리와 하지 위험 평가에서도 작업환경에서 오 는 부담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 따라서 54세의 여성 근로자 임 0 0 에게 발생한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분리증은 12년 간의 상기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 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.

#### 4 결 론

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임 ㅇ ㅇ은

- ① 의학적 검사(자기공명영상 촬영)에서 "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위증"으로 진단 받았으며,
- ② 유지가공제품(300g~1kg)의 박스 투입 및 빈박스 테이핑 포장 등의 작업에 12년 간 종사하였으나,
- ③ 이 근로자의 연령과 의학적 검사상 요추의 퇴행성 소견이 뚜렷하며,
- ④ 위 작업이 중량물 취급 작업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인간공학적 평가에서 허리 와 하지 위험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작업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 였다.